

## 8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 보고

제108회기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 사업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위원장 한수환  
서 기 이상협

### 1. 조직

#### 1) 임 원

- 위원장: 한수환
- 부위원장: 권택성
- 서 기: 이상협
- 회 계: 김현범
- 총 무: 김용제

#### 2) 위 원

이윤찬 노두진 서현수 박영제

### 2. 회의

#### 1) 전체회의

##### (1) 제1차 회의

☞ 일 시: 2023. 11. 2.(목)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임원을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한수환 목사, 부위원장: 권택성 장로, 서기: 이상협 목사, 회계: 김현범 장로  
총무: 김용제 목사
- ② 총회결의 사항 확인 및 조치를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다.  
가. 교회성윤리대응지침서를 차기 회의 전까지 살펴보고 자구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다.
- ③ 차기 회의는 12월 1일 또는 7일 중 택일하여 모이기로 하다.

##### (2) 제2차 회의

☞ 일 시: 2023. 12. 7.(금)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교회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는 108회기 보고대로 사용하도록 노회에 통보하고 미흡하거나 개선의 여지에 대해서는 개별 노회에서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로 의견을 전달 수렴하기로 하다 (홈페이지 공개는 보류하기로 하다).
- ②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 정관을 개정하여 규칙부 심의 후 109회기 총회 때 확정하기로 하되, 초



안은 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겨 제정하기로 하다.

- ③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인권관련 성명서는 회기 동안 잘 준비하여 109회기 총회 현장에서 총회장이 발표하도록 하다.
- ④ 사회대응 이슈를 발굴하여 차기 회의에 대응하기로 하고 각 노회에 대응 이슈를 요청하기로 하다(제출기한 1월말까지).
- ⑤ 차기 회의는 2024는 2월 1일 오전 11시에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 (3) 제3차 회의

☞ 일 시: 2024. 2. 1.(목)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교회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 노회회람에 대해 완료 보고를 받고 개별노회 요청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가. 교회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 요약 PPT제작
  - 나. 교회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 소책자 제작
- ② 교회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 4장 9항을 권면사항으로 변경하기로 하다.
  - 가. 노회는 교회 성윤리 예방 교육을 노회원들에게 격년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목회자 성윤리 지침 서약서를 격년으로 받아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 나. 4장 5항 ㉠,㉡은 삭제하기로 하다.
- ③ 교회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 소책자 제작은 109회기 예산을 청원하여 제작 배포하기로 하고 교회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 요약 PPT제작은 전문가를 섭외하여 제작배포하기로 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인권관련 성명서는 회기 동안 잘 준비하여 109회기 총회 현장에서 총회장이 발표하도록 하다.
- ④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 규정을 별지와 같이 제정하여 규칙부 심의 후 109회기 총회 때 확정하기로 하다.
- ⑤ 차기 회의는 2024는 4월 25일 오전 11시 30분에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 (4) 제4차 회의

☞ 일 시: 2024. 5. 3.(금)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교회성윤리 지침서는 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 ② 대사회대응위원회 규정을 확정하고 규칙부로 공문을 발송하여 규정 심의에 부의하기로 하다.
- ③ 차기 회의는 2024년 8월 9일 오전 11시에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 최종 보고

### 1. 제108회 총회 수입 사항

- 1) 성정체성 관련 초,중,고 교과서 개정 관련 건 - 대사회문제 대응위원회에서 대응
- 2) 사학법 관련 건 - 대사회문제 대응위에서 총회와 한교총, 전문가, 지역교회 등과 협력 대처
- 3) 차별금지법 관련 건 - 대사회문제 대응위에서 총회와 한교총, 전문가, 지역교회 등과 협력 대처
- 4) 코로나 19관련 정부가 예방방해 행위 관련 - 대사회문제 대응위원회에서 대응

### 2. 처리 내용

- 1)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와 입법 저지는 대사회문제대응특별위원회가 한교총과 전문가와 협력하여 대처 중.
- 2) 차별금지법 재정반대 사학법 관련 전국교회에서 홍보 및 서명지를 지난 회기 때 전국노회를 통해 본 위원회가 취합하였으며 정부여당 관계자에게 지난 회기 때 전달하고 총회차원의 효과적이고 구체적 방법을 앞으로도 연구하여 도출할 계획임.
- 3)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가 시작되어 21대 국회까지 시도되었으며, 단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아닌 위헌적, 빈국가적, 반사회적, 반기독교적인 과잉 법안이기에 총회와 한교총의 공동 대응이 필요함.
  - 대응 방안은
    - ① 총회 임원회와 대사회문제대응특별위원회의 활동, 대책회의와 세미나, 전국 노회와 교회의 협력
    - ② 총회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의 협력을 통한 한국교회 공동 대응 강화
    - ③ 총회와 노회별 대사회문제대응특별위원회 조직 활동, 지역별 기도회 등
    - ④ 국회의와의 소통, 법안 분석 및 검토의견서 제출, 성명서 발표, 지역 국회의원 면담 설득
    - ⑤ 법안 분석과 대처를 위한 전문기관(한국교회법학회, 진평연 등)와 전문가들과 협력 강화
- 4) 성정체성 관련 초,중,고 교과서 개정 관련 건 -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에서 지난 회기 검정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책임 있는 정부 관련자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추후 정부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5) 성폭력대응 관련 건은 대사회문제 대응위원회에서 교회성윤리 지침서를 보완하였으며 109회기 총회시에 보고하고 본회의 통과 시 전국교회 배포 및 적극 활용.

### 3. 최종 결론

국가와 사회와 기업과 교육과 교회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개정사학법 등 국회에서 시도되는 악법 철폐를 위해 총회 특별위원회인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된 권한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으며, 연합사업 차원에서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법학회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처하고 있음.



## 청 원 서

수신: 총회장

참조: 서기 및 재정부장

제목: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 청원의 건

아래와 같이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본 위원회의 목적과 주요 사업인 교회생태계 보호와 반기독교정책 대응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본 위원회 사업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활동에 맞는 대사회문제 대응위원회 정관을 새롭게 개정하였고 또한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특별예산(3,000만원) 편성을 청원합니다.
2. 교회성윤리 지침서를 보완하였으며 109회기 총회 시에 보고하고 본 회의 통과 시 총회 홈페이지를 통한 전국교회 배포 및 적극 활용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 정관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2024년 9월

대 사회 문 제 대 응 위 원 회  
위원장 한 수 환  
서 기 이 상 협

[별첨]

##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 규정(안)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사회 문제 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다양한 대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3조 (목표): 본 위원회는 대사회 문제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목표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교회의 건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총회를 대신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처리한 전말을 총회에 보고한다.  
예) 차별금지법 문제, 동성애 문제, 군 대체복무제 문제, 각종 인권조례(학생, 지자체) 문제, 낙태문제, 교과서 종교 편향 문제, 젠더리즘 문제, 급진적 페미니즘 문제 기타 등
2.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사회문제에 대하여 연구 조사하되 총회에 제의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연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시 타교단 및 기관과의 연합을 통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4. 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알리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자료 제작 및 보급한다.

### 제2장 조직 및 임기, 임무

제5조 (구성): 본 위원회는 1년조, 2년조, 3년조로 하되 지역을 안배하여 각년조 3명씩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회임원 당연직(총회장, 목사 및 장로부총회장, 서기)을 포함한다.

제6조 (임원):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1. 위원장: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3. 서 기: 본 위원회 문서 수발 및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4. 회 계: 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5. 총 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자문역할을 한다.

제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1년조를 교체한다.

매년 9월 교단 정기총회 후 2,3년조는 자동으로 임기가 승계되며 1년조의 임기는 종료된다. 임원의 임기는 총회 회기와 연동하여 1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 선출): 임기가 만료된 1년조 위원에 대하여 해당 구도별 책임자를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회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자문, 전문위원): 본 위원회는 효과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사회 문제에 대한 조사와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위원 및 타교단 및 기관과 연합하여 대처하는 업무를 위하여 10인 이내로 자문,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제3장 회의 및 대응

제10조 (회의 소집): 통상 회의는 1주 전에 통보하고, 긴급회의는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개회 성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12조 (의사 결정): 본 위원회 운영의 의사 결정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 (대응의제 선정):

1. 대사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 누구나 위원장에게 대응의제 선정을 제안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즉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회는 대응 의제를 선정하고 총회장의 허락을 받아 대응한다.

제14조 (대응 방법):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명 집회 법적대응 기타 성격적 방법을 사용하되 본 위원회 결의에 따라 시행하고 총회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5조 (결과 보고): 대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과 결과, 효과 등을 9월 교단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재 정

제16조 (예산): 본 위원회의 재정은 본 교단 총회에서 편성한 예산과 후원금으로 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회계 연도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8조 (회계감사): 위원회의 회계에 관해서는 매년 총회 감사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장 문서 관리

제19조 (문서):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보관한다.

1. 회의록
2. 본회 규정
3. 자문위원 명부
4. 공문서철
5. 회계장부
6. 조사/연구 보고서철
7. 기타

##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본 규정은 교단 총회 결의와 동시에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해 산): 본 위원회의 해산은 본 교단 총회 결의로 확정되고, 잔여 재산은 총회에 귀속된다.

제3조 (규정개정): 본 위원회의 규정의 변경은 전체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총회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세 칙): 본 위원회의 각 세칙은 본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제5조 (통상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 및 규칙을 우선으로 따르되 기타 부분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교회 성윤리 지침서





## 교회 성윤리 지침서

1. 교회 성 윤리란? .....	3
2. 알기쉽게 정리한 “성 윤리” 관련 용어 정리 .....	3
3. 성 윤리에 대한 오해 .....	4
4. 성 윤리에 대한 교육 및 조치 .....	5
5. 교회 성 윤리 피해 대처 방법 .....	8
6. 성 윤리 상처 치유 지침 .....	10
7. 그루밍 .....	12
8. 성 윤리에 대한 성도의 자세 .....	14
9. 목회자 개인이 할 일 .....	15
10. 성 윤리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법 .....	17
11. 성 윤리에 대한 대응 .....	18
12. 성 윤리 전문 상담소 및 기관 안내 .....	23





## 1. 교회 성 윤리란?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

### ■ 교회 성 윤리

교회 성 윤리란 (일반사회 성폭력등 기타 성범죄와 성경적 성 관련 범죄등) 일컬어 교회 안에서 성 윤리라고 정한다. 이하 성폭력도 포함하여 성 윤리로 사용한다. 교회나 기독교기관, 선교단체 등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적 범죄등을 말한다.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가 종교적인 특수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신도나 고용된 목회자(부목사, 전도사 등)에 성추행이나 간음 또는 그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목회직 돌봄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 행위를 빙자하여 행하는 성적 행위는 가해자의 물리적 힘의 행사나 피해자의 저항 유무와 관계없이 성 윤리 범죄의 위반이 포함됩니다.



## 2. 알기 쉽게 정리한 “성 윤리” 관련 용어 정리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

### ■ 성 윤리

성 윤리 위반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행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단, 양성애나 동성애나 성 전환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제외 됩니다)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으로 불리던 것을 묶어 ‘성 윤리’라고 부르게 된 까닭은 그것이 윤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 윤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 윤리라 할 수 있습니다. 성 윤리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성 윤리 범죄의 성 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156호)”에서 제시하는 범죄 유형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공연 음란, 음화 반포, 음행 매개 등입니다. 강간은 강제적인 성기의 삽입을 뜻하며, 삽입에 이르지 않은 접촉은 성추행으로 분류합니다. 현행법은 성희롱을 성적인 언동을 해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한 행위, 그리고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금한 일체의 성 범죄를 포함합니다.



### 3. 성 윤리에 대한 오해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

#### ■ 성 윤리 위반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X)

낯선 사람이 성 윤리 가해자일 때도 있지만 이웃이나 친구, 가족, 동료 등과 같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성 윤리 가해자인 경우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미디어나 뉴스에서는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성 윤리 사건을 주로 보도하거나 재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 윤리가 낯선 사람에 의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때문에 가깝고 친밀한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 윤리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대처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 성 윤리 위반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적 성욕 때문에 일어난다 (X)

성 윤리의 원인을 ‘충동적’ 성욕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 윤리가 일반적으로 가해자-피해자의 불균형한 권력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왜곡합니다. 성 윤리를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가’의 개인적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구조 속에서 성 윤리가 발생가능하고 묵과되는지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적 욕구를 조절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합니다.

#### ■ 성 윤리는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 (X)

‘성 윤리는 여성에게만 일어난다’는 편견이 있지만 남성도 피해를 경험하며, 특히 13세 이하 아동의 경우 전체 아동 성윤리 피해자 중 약 10% 정도 (한국성윤리상담소 2014년 상담통계)가 남성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편견 때문에 성윤리를 경험한 남성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거나 드러내어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의 피해라고 해서 결코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 ■ 여성의 야한 옷차림이 문제다 (X)

실제로 노출이 많은 옷을 입는 여름이나 밤늦은 시간에 성 윤리가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통념 때문에 여성들의 몸과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특정한 윤리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게 만드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독 성 윤리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혐의를 두는 것은 남성의 성욕은 성 윤리로 이어진다는 편견과 관용적 시선, 여성에게 순결과 정숙을 강요하는 성 규범이 바탕이 됩니다. 성 윤리를 논하면서 피해자의 행동이나 외모와 관련시키는 것은 성 윤리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려 2차 피해를 줍니다. 성 윤리의 원인은 가해자-피해자의 권력관계, 한국 사회 성 규범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 성경적 성 범죄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 ■ 끝까지 저항하면 성 윤리 위반은 불가능하다 (X)

성 윤리에서 이루어지는 가해행위는 여러 다른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저항하면 성 윤리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방어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윤리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덧씌웁니다. 끝까지 저항하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목숨이나 안전보다 성 윤리를 막고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통념이며 이는 정조 의무를 여성에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 ■ 침묵은 사실상 동의이다 (X)

내가 침묵하는 순간은 언제나 동의했던 순간이었는지 떠올려 봅시다. 흔쾌히 “좋아!”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침묵할 때도 있고, 눈치를 볼 때도 있으며, 상대의 위협 때문에 선불리 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묵했으니 사실상 동의라는 주장은 어떤 조건 하에서는 약자의 거부 의사 표현은 매우 어려움을 간과한 것입니다.

### ■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X)

많은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성 윤리인지 판단할 때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생존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즉 피해생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침해 당했는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가해자의 의도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 ■ 성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면 성폭력이 아니다 (X)

여성을 성적으로 약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시선만으로, 농담만으로, 시늉만으로, 예고만으로 여성의 위축감과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려는 개인적, 지속적, 집단적 행위가 많습니다. 이 같은 행위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박탈합니다.



## 4. 성 윤리 교육 및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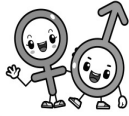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

- 1) 교회는 성에 대한 바른 신앙적 이해를 갖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공동체이다. 즉 육신의 가족처럼 인식하고 함께 살아가는 영적 가족 공동체이다. 이를 각인시켜줘야 한다.
- 2) 교회는 교인들을 위한 성 윤리교육(성 윤리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에 관하여 미리 교육하고 공지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3) 교회는 교회 내 성 윤리 예방과 성 윤리 사건 발생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만일 성 윤리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4) 교회는 교회 내에서 성 윤리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5) 교회는 교회 내 성 윤리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진상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회개를 촉구하며, 그와 유사한 성윤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교회 안에서 가해자가 지적될 경우 객관적 증거 또는 사실 입증 시 즉시 해당기관인 당회, 노회, 총회에서 필요시 직무를 정지하고 사실을 확인하여 확인시 즉시 직무를 절차에 따라(교단 헌법 결의등) 정직과 해임, 파면한다.
- 6) 특별위원회가 성 윤리 문제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여러 번 반복해서 증언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거나, 가해자와 선부른 화해를 요청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에는 교회 외부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 7) 교회는 피해자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의료적,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8) 교회는 성 윤리 문제 발생 시, 이를 노회에 보고해야 하며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관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9) 노회는 교회 성윤리 예방 교육을 노회원들에게 격년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목회자 성 윤리 지침 서약서를 격년으로 받아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 10) 노회는 성 윤리로 신고된 목회자(목사, 전도사)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해당 목회자가 시무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이후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될 때,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과 처벌을 알려야 합니다.
- 11) 총회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2) 총회는 노회별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 13) 총회는 교회 내 성 윤리 관련 상담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피해자가 전문상담을 받도록 배려하며, 총회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여 홍보합니다.
- 14) 총회는 교회 내 성 윤리 사건에 대하여 법률 제15156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15) 총회는 성 윤리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가해자를 적절하게 처리할 성윤리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5. 교회 성 윤리 피해 대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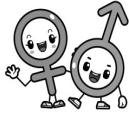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

### ■ 피해를 입었을 경우

- 1) 우선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예, 여성성윤리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 2)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조언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 3) 증거를 보존해 둡니다.
  - 가)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옷을 갈아입거나 세탁하지 않도록 합니다. 갈아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72시간 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합니다.
  - 나)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에 가서 “성윤리 피해로 왔다”고 진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 다)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몸을 씻지 말고 48시간 이내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증거를 채취합니다.
- 4) 본인의 감정과 의견을 포함하여 사건에 관한 모든 것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거가 될 자료들을 확보합니다.
- 5) 가해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받습니다.
  - 가) 가해자가 직접 사건을 시인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주고받은 문자 내용과 통화 기록도 남겨둡니다.
  - 나) 가해자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강요하거나 회유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한 대화를 최대한 자세히 진행하고 녹음합니다.
- 6) 가해자가 시인하지 않거나 사과가 미흡하다고 여겨질 때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가) 형법과 성윤리 특별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나) 교회법에 고소를 원할 경우 먼저 교회의 처리기관에 알립니다.(당회 또는 특별위원회)
  - 다) 교회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노회 등 상위 처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라) 사회법이나 교회법에 고소를 하고 그 과정을 겪는 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회개와 교정의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또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심리적인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 7) 피해자는 피해의 충격으로 인해 불안과 분노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6. 성 윤리 상처 치유 지침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

- 1) 피해자들이 반드시 상담, 교육, 법적, 의료적 지원, 그리고 치유를 위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2) 피해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3) 교회는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해당 사건을 정의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해자도 적절한 처벌과 더불어 치유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 4) 병원안내

### ■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 중심주의란,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주장을 우선시하여 가해자의 보복이 쉬운 성 윤리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관점을 중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중심주의는 항상 피해자 주관주의나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윤리 사건 때 보통의 경우 증인이나 증거물이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말보다는 피해자의 말을 채택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성윤리 사건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렵고, 또한 인정받기도 힘든 구조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말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 ■ 2차 가해

2차 가해란 피해자에게 그 피해 사실을 근거로 또는 범죄 피해자를 가리켜 행실이 불량해서 성 윤리를 자초한 것이라며 모욕이나 배척 등등을 가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위 개념은 성윤리 사건 때 가해자 또는 주변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흘려 사건을 왜곡하거나 피해자에게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를 가로막기 위해 생겼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2차 가해의 해석 범위가 점차 넓어져 사건의 해결을 가로막는 다양한 행위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성윤리 사건이 발생하면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이 2차 가해를 두려워해 쉬쉬하고 사건을 외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윤리 사건을 가해자, 피해자, 담당자의 몫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 성 인지 감수성

성 윤리 사건이 일어나면 구성원들은 당사자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조직이 과제를 도출하고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조직(당회, 노회, 총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성윤리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누구든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결의 열쇠는 조직의 구성원에 게 있습니다.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 함 또는 불균형 을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넓게는 성평등(젠더, 양성, 동성, 기타등 제외, 즉 이성만을 의미함)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합니다.



7. 그루밍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

그루밍 성범죄란?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은 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해하는 성범죄를 가리킵니다.

※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루밍 성범죄의 단계

- 1) 피해자 고르기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의존할 대상이 필요한 성도를 고릅니다. 혼자사는 여성, 아버지가 돌아가신 여성,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여성, 거처가 없어 교회에 거주하는 여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 주 타겟이 됩니다.
- 2) 피해자 신뢰얻기  
가해자는 예배, 성경공부, 상담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아갑니다. 피해자가 매일 말씀이나 기도를 문자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이를 묵회적 돌봄으로 생각하면서 가해자를 신실한 '주의 종'으로 믿고 따릅니다.
- 3) 피해자의 욕구 채워주기  
가해자가 주로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의 정서적 욕구를 채워줍니다. 함께 여러 가지 일을 같이하고 제안합니다.
- 4) 피해자 고립시키기  
가해자는 둘만의 사이의 비밀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자신과 피해자가 특별한 사이임을 강조 합니다.
- 5)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적요구를 합니다. 말로 피해자를 유혹하고 성윤리를 사랑으로 합리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느끼고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6) 통제 유지하기

사역이나 성경말씀을 빌미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세뇌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사실을 숨기고 성윤리에 순응 하게 합니다. 피해자가 벗어나고 싶어도 자신이 너무 깊게 연루되어 버렸다는 생각에 가해자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다 보면 오랫동안 성윤리에 시달리고 피해를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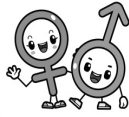
## 8. 성 윤리에 대한 성도의 자세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

- 1)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합니다.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 2) 이성 교역자나 지도자와 단 둘이 심방하거나 상담하는 행동을 삼가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 3) 교역자나 지도자가 필요 이상의 지나친 관심과 관계를 요구할 때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관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4) 성윤리 예방교육에 참여하며, 평소 성윤리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익혀 둡니다.
- 5) 성도는 교역자나 지도자도 인간이며, 성적 문제와 관계에 있어 취약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성적 대상으로 투사하지 않으며, 존경과 왜곡된 영적 권위를 분별합니다.
- 6) 교역자나 지도자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부부관계를 포함한 성적인 문제, 또는 심각한 우울증 등 병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역자나 지도자가 아닌 전문상담사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7) 교역자나 지도자의 성희롱적 농담, 여성비하적 발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 8)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소나 전문기관의 연락처 등을 알아두고 피해가 생겼을 경우 즉시 외부에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 9) 주변에서 사건이 발생 시 피해자를 만났을 때 공감과 정서적 지지를 하고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9. 목회자 개인이 할 일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

- 1) 목회자는 언제나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는 순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 2) 목회자가 스스로 성에 대한 가치관, 이성관에 대해서 성찰하고 성에 대해 지나치게 금기시하거나 성적 남용에 대해 관용적이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 3) 목회자는 건강한 가정생활과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4) 목회자는 이성 성도를 심방하거나 상담할 경우,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서 만나지 않고 다른 교역자나 교인들과 함께 만나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두 사람만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된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 5) 목회자는 이성 성도의 사생활(부부관계나 성적 문제)에 관해 지나치게 비밀스럽고 은밀한 이야기를 혼자 듣지 않도록 하며 둘 사이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성도가 사생활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경우, 동성 목회자나 전문 상담사에게 연계하도록 합니다.
- 6) 목회자는 성도들과의 신체적 접촉에 유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삼가며 성도간의 신체적인 접촉도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7) 목회자는 성희롱적인 발언(외모 비하, 성과 관련한 저급한 농담등)을 삼가며, 남녀의 성 고정 관념에 관한 (성경이 금한 성범죄 외)확신을 부추기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 8) 목회자 스스로의 탈진과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 육적 탈진을 해소 하거나 충전하는 건전한 방법과 자원을 개발합니다.
- 9) 목회자는 성적 타락과 폭력 방지에 대한 총회와 노회의 교육과 상담에 참여합니다.
- 10) 목회자는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고 의논하며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1) 목회자는 교회내에 발생하는 성윤리 위반에 대하여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2) 목회자는 목회자 성윤리 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서는 격년으로 의무교육을 받을 때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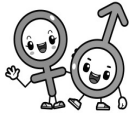
## 〈서 약 서〉

나는 아래와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목회자 성윤리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나는 높은 도덕 수준을 유지하는 순결한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 (2) 나는 교회 내에서 동역자나 교우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적인 대상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 (3) 나는 성윤리를 예방하기 위한 총회의 교육에 참여하며, 필요 시 총회나 노회에 성문제 상담을 요청하겠습니다.
- (4) 나는 교회 내 사역자들에게 성윤리를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5) 나는 목회자도 성적 존재임을 받아들이며, 성적인 유혹을 극복하도록 성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들을 갖겠습니다.
- (6) 나는 양성 간의 평등과 정의가 교회와 사회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나는 아래와 같은 조항에 대해 인증하고 관련사항의 조항을 허락합니다.
  - (a) 사회법이나 교회법으로 본인의 성적 비행에 대하여 처벌을 받거나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b) 위와 관련하여 사회법과 교회법의 결과 조항을 허용합니다.
  - (c) 서약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권징과 치리의 대상이 될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 10. 성 윤리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법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

### (1) 개인적 해결

가. 가해자에게 직접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요구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요구는 개인적인 사과 받기, 조직 내에서 공개 사과하기, 직장을 자발적으로 떠나거나 조직에서 탈퇴하기 등이 있을 수 있어요. 행위자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피해자가 만족한다면 해결이 됩니다. 개인적 해결 시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와의 합의사항 및 이를 이행하는 시기와 방법을 서면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서, 내용증명 등

나. 개인적 해결의 경우 필요할 시에 피해자가 신뢰하는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 좋습니다.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접촉하기가 어렵다면 도움을 요청한 조직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1. 성 윤리에 대한 대응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

### (1) 차분한 대응

- 1) 피해 일시
- 2) 피해 장소
- 3) 가해자 및 가해자와의 관계
- 4) 가해자의 가해행위피해
- 5) 당시 동석자 혹은 목격자피해 당시의 대응
  - 성윤리/성희롱인지 몰라서 참고 있음
  - 두려워서 가만히 있음
  - 거부 의사를 표현함  자리를 피함
  - 기타: 피해 당시의 기분, 생각이후 직장생활/조직생활에서의 어려움 가해자의 반응
  - 사과함 / 변명함
  - 실수였다고 둘러댐
  - 자리를 피함



화냄

기타

6) 증거자료

녹취 등 진술 녹음본

서면 자료

○ 가해자에게 보낸 편지, 메일

○ 가해자에게 보낸 요구안

○ 가해자에게 받은 각서

○ SNS, 메신저, 문자 대화

○ 주변 지인과 나눈 대화: 시기, 내용 등

○ 통화 기록

진단서

상담기관과의 상담확인서

CCTV 등의 영상자료\* 성폭력의 경우

당시 입었던 옷

가해자의 지문, 땀, 모발 등

폭력이 있었을 경우 상해 사진

병원 진료 기록 및 진단서피해자가 원하는 바

7) 가해자에게 바라는 것

사과

공간 분리

가해자 교육

가해자의 과제 제출

접근 금지

피해자의 소속 공간에서 탈퇴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

봉사활동

기타:

8) 사건 해결 및 처리 과정

공문화

비밀 유지

대리인 선임 여부

가해자와의 사적인 해결

교회 내 조치

행정적 절차 ○ 고소, 고발

사법적 절차 ○ 형사 고발 ○ 민사 소송(손해배상청구)

(2) 사법적 대응

가. 형사고소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등)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윤리처벌법 제10조 등)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행위
- 강간(형법 제297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일컬음.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강제하는 행위
- 유사강간(형법 제297조2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이 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함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윤리처벌법 제14조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말함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윤리처벌법 제13조 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
- 성경이 금한 모든 성적 범죄 (신5:18, 22:13-20, 십계명중 7계명과 순결에 관한 법)

※ 형사 고소 진행 전 알아둘 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가해 행위에 법적인 위반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법률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지 살펴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생각보다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고 과정에 있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타 절차들보다 증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정을 거치며 생각보다 깊은 상처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 고소 방법 및 경찰 조사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우선 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에 따라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할 시 주변인이나 참고인 조사, 가해자와의 대질 신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질 신문의 경우 피해자는 신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의 조사를 마친 후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나 이외의 조사가 이루어지며,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며 기소/불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나. 민사소송

- ① 성범죄 피해로 인해 재산상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유죄가 나왔을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판단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무죄로 나왔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무조건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의 무혐의, 무죄판결의 이유가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 ③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다른 법적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고 형사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④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해요.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면 본인 신문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에 조정, 화해조치 등의 합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⑤ 일단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이를 심사해 가해자에게 소장을 전달하는데요. 가해자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의 답변을 제출하면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변론의 답변을 제출한다면 쟁점을 정리해 각자 변론한 후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⑥ 손해배상액은 소극적 손해(사고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으리라 예측되는 소득), 적극적 손해(치료비, 향후 치료비, 진단서 비용 등의 물질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뉘어 책정됩니다.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는 자료에 기초해 금액이 결정되고 위자료는 추가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액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⑦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손해배상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전에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 교회 소송 (헌법, 규칙, 결의)

■ 성 윤리 역고소

성윤리 역고소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성윤리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 없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 ■ 무고죄

무고죄란 쉽게 말하면 허위사실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고소하는 것인데요.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허위사실일 것과 ② 고의일 것이 모두 성립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고소가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객관적으로도 이 사실이 인정될 때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판례에도 성윤리 피해 신고 사실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이 자체를 무고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은 내용의 사실 여부와 상관 없이 어떤 내용을 지인이나 공공에 알릴 때 해당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윤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공론화 시켰을 경우, 피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명예 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진실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건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제3자와 논의하거나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일은 공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2. 성 윤리 전문 상담소 및 기관 안내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

- 1) 교회 성윤리 사건 1차 문의 및 접수(상담)
- 2) 전문 상담기관 연결 (피해자 요청 시)
- 3) 교회 성윤리 사건 진상 조사 및 심의
- 4) 교회 성윤리 사건 진상 조사 및 심의 결과 보고  
(당회 노회 총회 임원회), 고지(해당 기관)

## ■ 기관 및 센터

- (1) 한국성윤리 위기센터([www.rape119.or.kr](http://www.rape119.or.kr))(센터장 박윤숙)
  - ① 전화상담: 02-883-9284(평일 오전 9:00-18:00)
  - ② 면접상담은 전화예약 후 면접가능
  - ③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59길 31, 1층 102호
  - ④ 연락처: 사무 02) 883-9285 상담 02) 883-9284 Fax: 02) 883-9281
  - ⑤ E-mail: [crisis119@hanmail.net](mailto:crisis119@hanmail.net)
  - ⑥ 홈페이지: [www.rape119.or.kr](http://www.rape119.or.kr)
- (2) 기독교여성상담소([www.8275.org](http://www.8275.org)) (소장 채수지)
  - ① 전화상담: 02)2266-8275 (평일 10:00-17:00)
  - ② 면접상담은 전화예약 후 면접가능
  - ③ 온라인 상담(상시 [www.8275.org](http://www.8275.org))



④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1길 20 CI빌딩 405호(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건물)

■ 기타 성윤리 전문상담소 및 신고 기관

- (1)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
- (2) 여성폭력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3) 한국여성인권진흥원(www.stop.or.kr) 02-735-7544
- (4) 한국성윤리상담소 02-338-5801~2
- (5)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335-1858
- (6)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7)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 (8) 한국성윤리위기센터 02-883-9284
- (9) 아동보호전문기관 129/ 1577-1391
- (10) 한국여성장애인연합 02-3675-4465-6
- (11) 해바라기센터(본부-서울지부) 02-3672-0365